

9. 룩셈부르크 (Luxembourg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11년(임금 소득자), 1931년(급여 근로자)
- 현행법 : 1987년(통합연금보험제도), 1989년(연금제도), 1998년 (특별제도), 2000년(연금제도), 2012년(연금)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. 적용대상

- 자영자, 견습생(도제) 및 농민을 포함한 사적부문 모든 경제 활동자와 1998년 12월 31일 이후 노동인구로 참여 한 공공부문 근로자
- 임의가입 가능
- 특별제도 : 1999년 1월 1일 이전 노동인구로 참여한 철도근로자 및 공공부문 근로자

4. 자원조달

- 가입자
 - 소득의 8%
- 자영자
 - 소득의 16%
- 사용자
 - 소득의 8%
- 정부
 - 소득의 8%; 1998.12.31.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공공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납부

※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액은 법적 월 최저임금임

- 하한액 : 법적 최저임금 €1,998.59

- 상한액 : €9,992.93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

- 보험료 납부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65세 도달 자에게 지급(임의가입 및 소급가입 포함)
- 18세~27세까지 공부 및 수습기간, 6세미만 자녀(장애가 있는 경우 18세) 또는 장기요양 또는 장애급여 수급자 돌봄기간(1990년 이후), 질병·출산·산재급여 수급기간(2011년 이후), 실업급여기간, 최저소득보장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
- 가입자가 룩셈부르크 거주자이고, 65세 미만이며 최소 12개월의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연금의 수급자격도 없는 경우 무직 또는 근로시간이 축소된 기간에 대하여 소급 가입할 수도 있음
- 최저연금은 20년의 보험료 납부기간 혹은 크레딧 기간이 있을 경우 지급
- 해외송금가능

• 조기 노령연금

- 조기연금은 다음의 경우에 지급되고, 소득활동 중사가 허용되나 급여의 결정·유지 및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480개월 이상이고 57세에 도달한 자
 - 보험료 납부기간 120개월을 포함하여 가입기간*이 480개월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자
- * 임의가입기간, 소급가입기간 포함
- 소득조사 : 조기연금은 전년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이 법적 최저임금(€1,998.59)의 1/3이상인 경우 환수될 수 있음
- 노령청산금 : 납부기간이 120개월 미만인 65세 도달자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

- 65세 미만으로서 장애발생 전 3년간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주로 종사했던 직업이나 그 직업과 유사한 직업에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자
- 사고 혹은 산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, 최소 가입기간 조건은 없음
- 장애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(€1,998.59)의 1/3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,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음
- 최저연금은 20년의 보험료 납부기간 혹은 크레딧 기간이 있을 경우 지급
- 일반 퇴직연령 도달시,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해외송금가능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

- 가입자가 사망 이전 3년간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었거나 사망 당시 노령 혹은 장애 연금수급자인 경우 지급
- 사고 혹은 산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, 최소 가입기간 조건은 없음
- 가입자가 결혼 당시 노령 혹은 장애연금 수급자가 아니고, 퇴직일(연금수급자의 경우)이나 사망일(가입자의 경우) 이전 최소 1년 전에 혼인 또는 법적 동거 신고가 이루어진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신고 된 파트너(가입자의 사망 전에 재혼하지 않은, 이혼한 배우자 또는 헤어진 파트너도 해당)
- ※ 다음의 경우 상기 조건은 면제 됨
 - 산재 혹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
 - 사망자와 그의 배우자나 동거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
 - 결혼이나 동거생활이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(결혼 또는 동거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고 배우자들 또는 동거인들 사이의 연령 차이가 15년 미만인 경우
- 법적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후에 결혼을 하거나, 동거를 하지 않는 한 수급권이 발생하고, 자녀가 18세 미만(학생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경우 27세)일 경우 지급
- 생존 배우자 부재 시에는 사망자의 부모 또는 사망자와 5년 이상 동거했던 40세 이상의 가까운 친척에게 지급
- 최저연금은 20년의 보험료 납부기간 혹은 크레딧 기간이 있을 경우 지급
- 소득조사 : 조기연금은 전년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이 법적 최저임금 (€1,998.59)의 1/3이상인 경우 환수될 수 있음
- 홀아비(미망인)연금은 재혼 또는 동반자 관계일 경우 지급이 중단됨
 - * 재혼정착금 : 재혼 또는 동반자 관계일 경우 지급됨
- 해외송금가능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 : 연금월액은 정액연금 및 비례연금으로 구성됨

- 정액연금 :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월 €478.25 지급(가입기간 40년 미만인 경우 부족한 기간 1년 당 1/40 씩 감액)
- 소득비례보조금
 - 가입자의 생애 총소득의 조정된 비율 1.813%(2025년 1.6%달할 때까지 매해 0.006%씩 감율), 매해 증가율 0.013%(2025년까지 0.025% 상승), 가입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의 총합이 93(6년마다 1씩 증가하여 2052년에 100에 도달)을 초과하는 경우

- 최저보장연금
 -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과 €1,789.45 차액이 지급됨
 - 가입기간이 40년 미만이나 2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부족한 기간 1년 당 1/40 씩 감액 지급
- 월 최대 노령연금액 : €8,242.81
- 조기노령연금
 - 노령연금 산정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됨
 - 가입자의 월 평균임금(1년 이상)이 최소한 법적 최저임금(€1,998.59)의 1/3은 되지만, 가입자의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간의 평균임금보다 적을 경우 소득과 연금의 합은 가입자의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
 - 가입자의 월 평균임금(1년 이상)이 가입자의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간의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, 연금은 지급되지 않음
- 노령보조금
 -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자에게 €760.56 일시금 지급
 - 가입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 가입자에게 부족한 기간 1년 당 1/40 씩 감액 지급
- ※ 급여 조정 : 생계비 변동 및 정기적 임금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됨
- 노령청산금 : 사용자 및 근로자 기여금을 일시금 지급(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됨)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
 -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월 €478.25의 정액 연금(가입기간 40년 미만인 경우 부족한 기간 1년 당 2.5%씩 감액)
- 소득비례보조금
 - 가입자의 조정된 생애 총소득의 1.813%(2025년 1.6%달할 때까지 매해 0.006%씩 감율)와 매년 가입자의 조정된 생애 총소득의 0.013%(2025년까지 0.025% 상승), 가입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의 총합이 93(6년마다 1씩 증가하여 2052년에 100에 도달)을 초과하는 경우
- 추가 정액급여
 -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65세까지 가입했을 경우를 가정하여, 추가 정액급여를 지급
 - 장애가 55세 이전에 발생하였을 경우,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55세까지 지급되었을 임금을 가정하여 추가적인 소득비례보조금을 지급
- 최저보장연금
 -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과 €1,789.45 차액이 지급됨

- 가입기간이 40년 미만이나 2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부족한 기간 1년당 1/40 씩 감액 지급
- 월 최대연금액 : €8,242.81
- 장애보조금
 -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자에게 €760.56 일시금 지급
 - 가입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 가입자에게 부족한 기간 1년 당 1/40 씩 감액 지급
- ※ 급여 조정 : 생계비 변동 및 정기적 임금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됨

○ 유족연금

- 배우자 연금
 -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였을 경우, 정액연금의 100%에 비례연금의 75%를 가산하여 지급
 - 배우자 연금은 사망한 가입자가 수급할 수 있는 노령 또는 장애연금 기준으로 함
 - 적격한 이혼 배우자나 헤어진 파트너에 대한 배우자연금은 결혼 및 동거기간 동안 축적된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됨
 - 소득조사 : 다른 연금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연금은 감액됨
 - 최저보장연금
 -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과 €1,789.45 차액이 지급됨
 - 가입기간이 40년 미만이나 2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부족한 기간 1년당 1/40 씩 감액 지급
 - 재혼정착금 : 50세 미만 미망인(홀아비)이 재혼 또는 동거 시 배우자 연금 월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; 50세 이상인 경우 36배
 - 유족보조금
 -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자에게 €760.56 일시금 지급
 - 가입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 가입자에게 부족한 기간 1년 당 1/40 씩 감액 지급하며 만약 배우자가 다수인 경우 균등 지급
- 고아연금
 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였을 경우, 정액연금 및 유족보조금의 33%에 비례연금 25%를 추가로 지급함.
 - 사망자가 가입자였을 경우, 고아연금은 가입자가 수급권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기본으로 하여 고정급여의 33%에 소득비례보조금의 25%를 추가 가산하여 유족수당 지급
 - 완전고아의 경우 연금액의 2배를 수급
 - 소득조사 : 총 소득이 일정기준 초과시 감액됨

- 유족연금 최고액은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100%를 초과 할 수 없음

7. 관리운영기관

- 사회보장부(Ministry of Social Security)
 - 전반적 감독
 - <http://www.mss.public.lu>

- 국가연금보험기금 (National Pension Insurance Fund)
 - 사적 부문의 제도 관리
 - <http://www.cnap.lu>

- 공공근로자 관리청(Public Employees Administration)
 - 공무원제도 관리

<2018년 ISSA 자료>